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04. 3. 19.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8조 제2항중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를 “10인 이하의 위원(시의원 1인이상 포함)” 으로 구성 하도록 수정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를 “시의원 1인이상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4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로 수정

3. 참 고 사 항

- 지방세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2항중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를 “10인 이하의 위원(시의원
1인이상 포함)”으로 구성 하도록 수정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시의원 1인이상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4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로 수정

수정안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생략) ②<u>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u> 1.~5.(생략) ③~⑥ <u><신설></u>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u>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1.~5.(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개정안과 같음) ② -----<u>10인 이하의 위원(시의원 1인 이상 포함)-----</u> -----<u>시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u> 1.~5.(개정안과 같음) ③~⑥(개정안과 같음)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 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제6조의2제1호----- ----- ----- ----- ②----- 제6조의2제2호----- ----- ----- 제21조(신고 및 납부)① -----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 ----- -----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신고 및 납부)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 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월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월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4.(생략)	----- ----- ----- -----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 ----- ② ----- -----산출세액-----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4.(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법인세환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환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환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법인세환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제 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 -----산출세액-----산출세액 -----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①(생략)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u>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u>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①(현행과같음) ②-----<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 ----- ----- ----- -----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①(생략)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①(현행과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u>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96조의6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u>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생략) ③ <u>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u> ④(생략)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u>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u>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u>----- ----- ----- ----- ④(현행과 같음)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u>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u> ----- ----- ----- ----- -----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0조의3(세율)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115</u>로 한다. ②(생략)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생략)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52조(과세대상)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 제조담배 가.~라.(생략)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40조의3(세율)①----- -----<u>1,000분의 175</u>-----. ②(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u>신고하고 납부</u>----- ----- ----- ----- -----. 1.(현행과 같음) 2.----- ----- ----- <u>제248조</u>----- ----- 제52조(과세대상)①----- <u>담배</u>-----. ②-----<u>담배</u>----- ----- 1. ---- <u>담배</u> 가.~라.(현행과 같음) 2. ---- <u>담배</u> 3. ----- <u>담배</u>	제40조의3(세율)① (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제52조(과세대상)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3조(납세의무자)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u>제조담배</u>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u>제조담배</u>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u>제조담배</u>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①----- -----<u>담배</u>----- ----- ②----- <u>담배</u>----- ----- ③----- -----<u>담배</u>----- ----- ----- ④----- -----<u>담배</u>----- ----- ----- 제54조(과세표준)----- <u>담배</u>-----	제53조(납세의무자)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54조(과세표준)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 <u>제조담배</u> 가.~라.(생략) 2. 씹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650원 ②<u>제조담배</u>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u>제조 담배</u>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2.(생략)	제55조(세율)①----- ----- 1. ----<u>담배</u> 가.~라.(현행과 같음) 2. ---- <u>담배</u>----- 3. -----<u>담배</u>----- ②<u>담배</u>----- -----<u>담배</u>----- ----- ----- 1.·2.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u>담배</u>----- ----- ----- ----- ----- -----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생략)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u>제조담배</u>의 품종 및 주생산 <u>제조담배</u>의 품종 4.·5.(생략) 6. <u>제조담배</u>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9.(생략)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 ----- ----- ----- ----- ----- ----- 1.·2.(현행과 같음) 3. -----<u>담배</u>----- -----<u>담배</u>----- 4.·5.(현행과 같음) 6. <u>담배</u>----- 7.~9.(현행과 같음)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개정안과 같음)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u>제조담배</u>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기장의무)----- --<u>담배</u>----- -----	제59조(기장의무) (개정안과 같음)
제60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 까지 시에 <u>신고납부</u>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u>담배</u>----- ----- ----- ----<u>신고하고 납부</u>하여야-----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u>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 <u>제조담배</u>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 -----<u>담배</u>-----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 -----<u>담배</u>-----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u>제조담배</u>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u>신고 납부하여야</u> 한다.	④----- <u>담배</u>-----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	④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u><단서신설></u> 1.~3.(생략)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가산세) ①----- -----100 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3.(현행과 같음) 4.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신고한 세액----- ----- 5.-----담배 -----신고 ----- -----	제61조(가산세) ①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생략)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u>제조담배</u>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생략)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u>환급</u>을 받은 경우 4.(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u>제조담배</u>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담보)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u>제조담배</u>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u>담배</u>----- ----- ----- 2. (현행과 같음) 3.----- -----<u>환부를</u>----- 4.(현행과 같음) ③----- -----<u>담배</u>----- ----- 제62조(납세담보) ①(현행과 같음) ②----- ----- ----- -----<u>담배</u>-----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2조(납세담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제조담배</u>의 반출 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u>지가를 말한다</u>)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④ (생략) <신설>	③-----<u>담배</u>----- ----- -----. 제73조(과세표준) ①----- ----- ----- ----- -----<u>지가를 말한다. 이</u> <u>하 이조에서 같다</u>)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73조(과세표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 <u>신고납부 하여야 한다.</u>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 <u>신고납부 하여야 한다.</u>	제98조(납기)①----- ----- ---<u>신고하고 납부</u>하여야 한다. ②----- ----- -----<u>신고하고 납부</u>하여야 한다.	제98조(납기)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